



제 41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44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지 의무 신설	3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5
1) 농림축산식품부	5
2) 한국온라인쇼핑협회	6
나. 검토의견	6
1) 농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제도 현황	6
2) 검토의견	11
 [참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 추진 현황	19
[참고] 원산지 표시 방법 예시	2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0. 23.

3. 회 부 일 : 2024. 10.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점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점체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 같은 배달앱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입점 음식점과 소비

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이에 입점업체(통신판매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Ⅲ. 검토의견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지 의무 신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안 제18조제1항제3호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및 필요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인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② <u>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u>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u>통신판매중개업자는</u> 해당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u>통신판매중개의뢰자</u>”라 한다)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u>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신설>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③ (생략)	제18조(과태료) ①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4·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통신

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에 원안동의함.

2) 한국온라인쇼핑협회¹⁾

원산지 표시제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판매자와 정부(또는 주무부처)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부와 협조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와 관련된 사항을 강행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의견

1) 농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제도 현황

현행법은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이하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²⁾.

이에 현행법 제5조³⁾에 따라 농수산물·가공품 985개 품목, 음식점

-
- 1)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온라인쇼핑 관련 최대 협회로, 1,000여개의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음. 동 협회는 통신판매와 관계되는 상업윤리 확립의 촉진을 통해서 건전한 통신판매 거래형성을 도모하며 국민소비생활의 편리증진과 관련업체의 그 거래를 공정하게 하고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통신판매업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29개 품목의 167만 7천개소 업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제도 개요 >

구 분	내 용
개요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대상품목	농수산물·가공품 985개, 음식점 29개 품목
대상업체	1,677천개소(농식품 판매·가공 731, 음식점 946)
실적	- 원산지 표시 이행률(%) (’13)95.2 → (’18)95.6 → (’20)96.6 → (’21)97.0 → (’22)96.8 → (’23)97.3
대상별 표기방법	① 농산물: 포장재, 푼말, 표시판 등에 표시하며,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기하고, 외국산은 ‘통관 시 원산지(국가명)’를 표기 ② 가공품: 국내 제조 가공품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입 가공품의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를 표시 ③ 음식점: 메뉴판, 게시판, 주간 메뉴판 등에 표시(원산지표시판 대체 가능)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2024. 12. 9.

- 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또한, 현행법은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및 위반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주요 규정으로는 원산지 ① 거짓표시에 대한 벌칙(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과징금 처분, 원산지 ②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원산지 ③ 미표시 및 거짓표시에 대한 시정명령·위반자 공표·위반자 교육 이수명령 등이 있음.

<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규정 >

구 분		미표시	거짓표시	기타 위반
1	벌칙 (제14조, 제16조, 제17조)	-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재범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정명령(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과 거래행위 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
2	과태료 (제18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가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 거짓표시하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사협조 거부, 영수증 미보관 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 이수명령 미이행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 분		미표시	거짓표시	기타 위반
3	과징금 (제6조의2)	-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에 대하여 과징금(위반금액 5배 이하) 부과	-
4	시정명령 (제9조제1항)	표시의 이행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표시방법 위반 : 표시변경, 삭제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5	위반자공표 (제9조제2항~제4항)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업소에 대하여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등을 공표		-
6	위반자교육 (제9조의2)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업소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

원산지 조사·단속 실적에 따르면 '18년부터 '24년 10월까지의 적발률은 매년 1.40~1.86%로 나타남. 이러한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적발업소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농수산물 등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조사·단속 실적 >

(단위: 개소,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10.
조사업체(A)			275,163	174,353	168,273	187,157	234,472	197,634
적발실적(B)			4,004	2,969	3,115	3,191	3,451	2,767
적발률(B/A)			1.46	1.70	1.86	1.70	1.47	1.40
조치내역	거짓표시		2,396	1,661	1,634	1,637	1,745	1,409
	미표시	개소	1,608	1,308	1,481	1,554	1,706	1,358
		과태료 (백만원)	439	383	431	567	630	478

※ 주 : 원산지 표시 조사·단속 실적에는 통신판매 실적이 포함되어 있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2024. 11. 25.

원산지 조사·단속 실적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실적도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통신판매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19년에는 278건에 불과하였으나 '23년에는 863건으로 약 210.4%가 증가하였음.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실적이 증가한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 관련 온라인플랫폼의 이용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⁴⁾를 통한 비대면거래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예컨대 국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1년 약 25조 6,783억원으로 '17년 약 2조 7,326억원 대비 839.7% 급증하였음⁵⁾.

실제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실적 중 상당한 부분을 통신중개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적발 실적 차지('23년 기준 834건, 96.6%)하고 있음.

4)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한국소비자원,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 2022.12.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실적>

(단위: 건)

구 분	적발실적								
	전체 통신판매 적발실적(A+B)			통신중개 플랫폼 입점업체 적발실적(A)			통신중개 플랫폼 외 통신판매업체 적발실적(B)		
	합계	거짓 표시 (형사 입건)	미표시 (과태료)	합계	거짓 표시 (형사 입건)	미표시 (과태료)	합계	거짓 표시 (형사 입건)	미표시 (과태료)
2024. 10.	666	379	287	647	368	279	19	11	8
2023년	863	414	449	834	398	436	29	16	13
2022년	832	473	359	787	449	338	45	24	21
2021년	834	462	372	769	441	328	65	21	44
2020년	593	375	218	426	256	170	167	119	48
2019년	278	168	110	123	57	66	155	111	44

※ 주 : '22.6.부터 시스템에 통신판매업체별 구분 관리하였음. 이전 자료는 지원·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함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2024. 12. 6.

2) 검토의견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의

미함. 현재 네이버, 쿠팡, G마켓,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이 해당됨⁶⁾.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뢰한 자를 의미함. CJ, 농심, 삼양 등 생산·제조·판매업체와 배달 음식을 제조·판매하는 휴게·일반음식점 등을 말함.

<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의뢰자 >

구분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의뢰자
다양한 상품 취급	네이버, 쿠팡, 옥션,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삼성, LG, 현대, CJ, 농심, 삼양 등 생산·제조·유통업자
음식 위주 취급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식품점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등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2024. 12. 6.

현재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⁷⁾’를 통해 개정안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고지와 유사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즉, 통신판매중개업자는 2022년부터 동 협의체를 통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추진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논의하고 있음.

6) 정부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회원사’에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개정안의 규율 대상인 ‘식품’ 관련 업체를 명확히 선별하는게 어렵다는 입장임. 다만, 정부는 원산지표시법과 관련하여 약 40~50개 정도의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7) 2020년 국정감사(’20.10.7.)에서 윤재갑의원 등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증가에 대하여 지적하였음. 이를 계기로 농식품부, 해수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됨.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련 제도 안내 사례 >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식품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통신지 표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배포한 '통신판매원산지 표시 안내 리플렛'을 공지하오니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자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잘히 확인/점검하시어 적법하게 통신지표시를 한 뒤 판매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구분	전자제품	간과도	농산물
대상	컴퓨터, PC, 노트북, IPTV, TV	간과도	농산물, 잡곡, 전단지
표시방법	한글	한글	한글
표시위치	1.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2.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 표시하고 차이를 표시하는 별도 표시	1. 포장 두 번 이상 2.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 표시하고 차이를 표시하는 별도 표시	1.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2.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 표시하고 차이를 표시하는 별도 표시
표시크기	판매 제품명 옆면에 표시되는 지점	-	-
글자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	제품명 옆면에 표시되는 별도 표시 또 크기는 제품과 같은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같은 크기 1/2 이상 (예: 사과 3000원 3000원 표시) 30-3000원 3000원 표시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 별도 항목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 표시규칙」에 따른 원산지 표시 가능

식품(농산물)

① 품목 또는 명칭
② 포장단위별 내용물명 (종류 (종류), 수량, 크기)
③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시
④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⑤ 제조업자명 (제조업 또는 생산업), 유통업자
⑥ 관련법규 표시사항
⑦ 상품구분

가공식품

①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제품명
1-2. 제품명
1-3.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생산자, 수입자 또는 제조국)
1-4. 제조업자명, 유통업자 또는 유통업자명
1-5. 포장단위별 내용물명 (종류 (종류), 수량)
1-6. 제조업자명, 유통업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원산지 표시 예시>

- 대표 예시 -

<판매물 원산지> 00식품 작곡 식품
원산지: 00국 또는
상세 설명 항목에 표시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판매물 원산지> △△식품 냉동 1KG
△△식품 냉동 1KG
본 상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배달업 원산지 표시 예시>

- 대표 예시 -

<판매물 원산지> 00 라면&라면스 00점
00 라면&라면스 00점
△△식품 냉동 1KG

→ 네이버 사례

coupang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안내 자료를 수신하여 안내 드립니다.
판매자님께서는 잘히 확인하시어 원산지 정보를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구분	전자제품	간과도	농산물
대상	컴퓨터, PC, 노트북, IPTV, TV	간과도	농산물, 잡곡, 전단지
표시방법	한글	한글	한글
표시위치	1.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2.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 표시하고 차이를 표시하는 별도 표시	1. 포장 두 번 이상 2.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 표시하고 차이를 표시하는 별도 표시	1.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2.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 표시하고 차이를 표시하는 별도 표시
표시크기	판매 제품명 옆면에 표시되는 지점	-	-
글자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	제품명 옆면에 표시되는 별도 표시 또 크기는 제품과 같은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같은 크기 1/2 이상 (예: 사과 3000원 3000원 표시) 30-3000원 3000원 표시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 별도 항목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 표시규칙」에 따른 원산지 표시 가능

→ 쿠팡 사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교육자료 발송 중지, 11번가(2).png

11번가 오피스

판매자 공지사항 > 새로고침

관리자 권한

공지사항

번호	구분	내용
1	공지	[공지] 11번가 온라인 교육 및 안내
2	공지	[공지] 온라인 컨설팅 5월 종료
3	공지	[공지] 11번가 온라인 컨설팅 5월 종료
4	공지	[공지] 11번가 온라인 컨설팅 5월 종료
5	공지	[공지] 11번가 온라인 컨설팅 5월 종료
6	공지	[공지] 11번가 온라인 컨설팅 5월 종료
7	공지	[공지] 11번가 온라인 컨설팅 5월 종료
8	공지	[공지] 11번가 온라인 컨설팅 5월 종료
9	공지	[공지] 11번가 온라인 컨설팅 5월 종료
10	공지	[공지] 11번가 온라인 컨설팅 5월 종료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안내

안녕하세요, 11번가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안내 자료를 수신하여 안내 드립니다.
판매자님께서는 잘히 확인하시어 원산지 정보를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구분	전자제품	간과도	농산물
대상	컴퓨터, PC, 노트북, IPTV, TV	간과도	농산물, 잡곡, 전단지
표시방법	한글	한글	한글
표시위치	1.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2.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 표시하고 차이를 표시하는 별도 표시	1. 포장 두 번 이상 2.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 표시하고 차이를 표시하는 별도 표시	1.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2.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 표시하고 차이를 표시하는 별도 표시
표시크기	판매 제품명 옆면에 표시되는 지점	-	-
글자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	제품명 옆면에 표시되는 별도 표시 또 크기는 제품과 같은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같은 크기 1/2 이상 (예: 사과 3000원 3000원 표시) 30-3000원 3000원 표시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 별도 항목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 표시규칙」에 따른 원산지 표시 가능

→ 11번가 사례

공지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안내

안녕하세요, G마켓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료를 공유 받아 안내드립니다.

농수산물 판매하는 판매자분들께서는 상품등록 시 원산지 기재사항 미표시된 관련 제품을 없는 자 점검하여 주시고, 원산지 확인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바컨텐츠를 항상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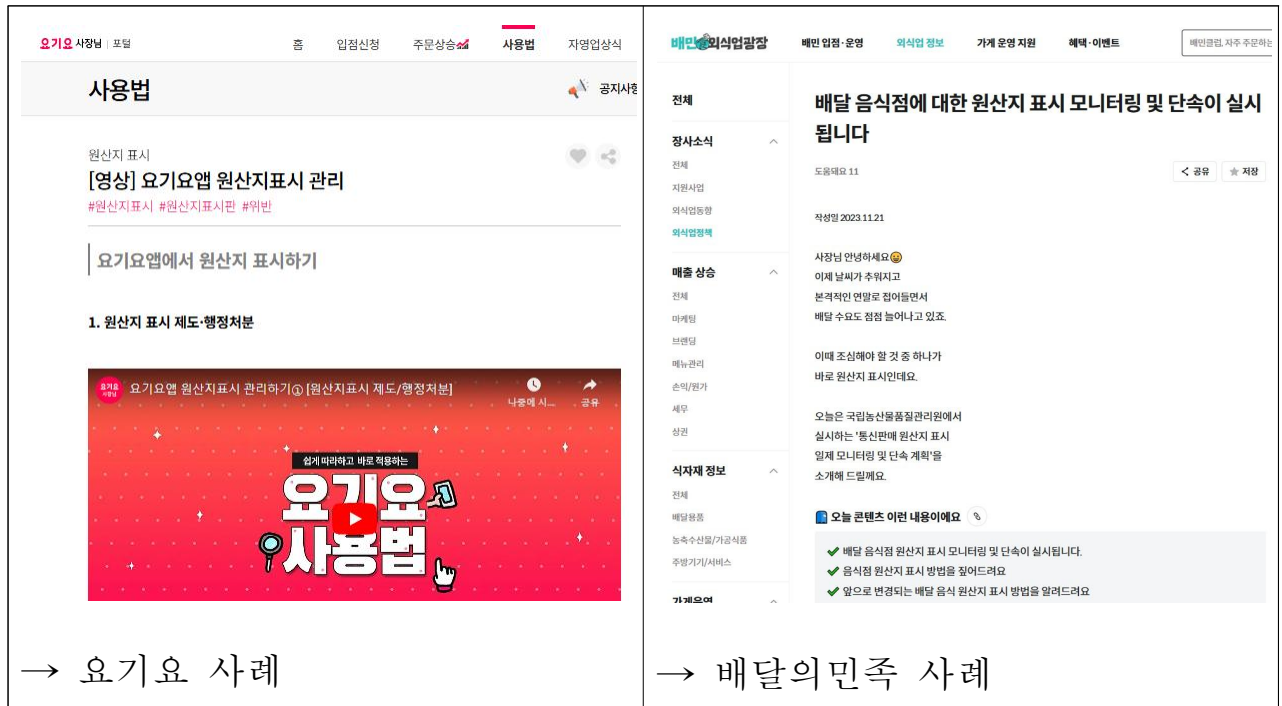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구분	전자제품	간과도	농산물
대상	컴퓨터, PC, 노트북, IPTV, TV	간과도	농산물, 잡곡, 전단지
표시방법	한글	한글	한글
표시위치	1.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2.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 표시하고 차이를 표시하는 별도 표시	1. 포장 두 번 이상 2.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 표시하고 차이를 표시하는 별도 표시	1.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2.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 표시하고 차이를 표시하는 별도 표시
표시크기	판매 제품명 옆면에 표시되는 지점	-	-
글자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	제품명 옆면에 표시되는 별도 표시 또 크기는 제품과 같은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같은 크기 1/2 이상 (예: 사과 3000원 3000원 표시) 30-3000원 3000원 표시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 별도 항목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 표시규칙」에 따른 원산지 표시 가능

→ G마켓 사례



※ 자료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제출(2024. 12. 2.)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고지 의무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 자율적 운영과 달리 현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유무의 차이가 있음.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고지 제도 비교 >

현행	개정안
-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안내함('22~)	-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할 의무 부과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한편,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측면이 있음.

먼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⁸⁾에 따라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쉽게 고지해야 함. 이러한 내용을 고지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다음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4호⁹⁾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위반 행위를 공표함. 이 때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도 포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9)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처분 내용 2. 해당 영업소의 명칭 3. 농수산물의 명칭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5.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함되어 있음. 이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수단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법적 구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책임을 부과받는 것으로 보임.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비교 >

현행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별도 조항 없음(따라서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명칭 공표	벌칙,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 위반자공표, 위반자교육 등 부과 받음

한편,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행법은 홈쇼핑업체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판매중개의뢰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6조제5항10)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 10)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음.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채널을 통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농수산물 등의 판매를 중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하지 않도록 고지 의무 등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22년부터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처럼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 고지를 의무화하되, 과태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다음과 같이 고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벌칙 규정 혹은 과태료 규정 등을 부과하지 않는 유사한 입법례가 존재함.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사 입법례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의2(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보험회사는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말한다)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문 의 처

02)6788-541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2024. 12. 2.>

- **(목적)** 통신판매 농수산물식품의 원산지 표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22.1.)
- **(구성)**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 **(운영)** 기관별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추진사항, 제도개선 사항 논의 등(반기)

○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업무협약('21.12.22.) →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 구성('22.1.25.) → 협의회 운영(연 2회/ 총 7회*)

* 개최일자: ('22) 3.23., 8.29. / ('23) 3.28., 9.13. / ('24) 2.21., 3.13., 8.30.

◆ 소비자에게 투명한 농식품 유통정보 제공 및 통신판매중개업체에서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감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계기 마련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동영상, 원산지표시 안내 리플릿 제작·공유, 화웨이 원산지표시 리플릿 제작·공유,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공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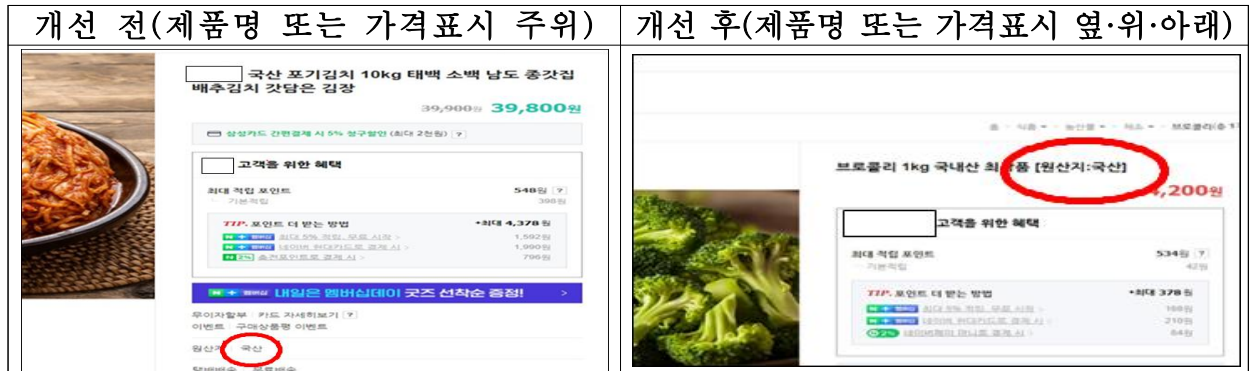
[illegible]

② 통신판매중개업체 자체 모니터링 및 원산지 위반업체 제재방안 마련('22.8~)

- * (네이버쇼핑) 모니터링 인력 채용·시스템 구축, (기타 중개업체) 입점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원산지 표시변경 지시 및 미이행 시 판매차단 조치

③ 통신판매중개업체 원산지 표시 판매시스템 개선('22.12.~'23.12.)

-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규정에 맞게 표시위치(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 글자크기(제품명 또는 최초 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개선



④ 배달앱 플랫폼 입점업체 원산지 미표시 위반방지 방안 마련('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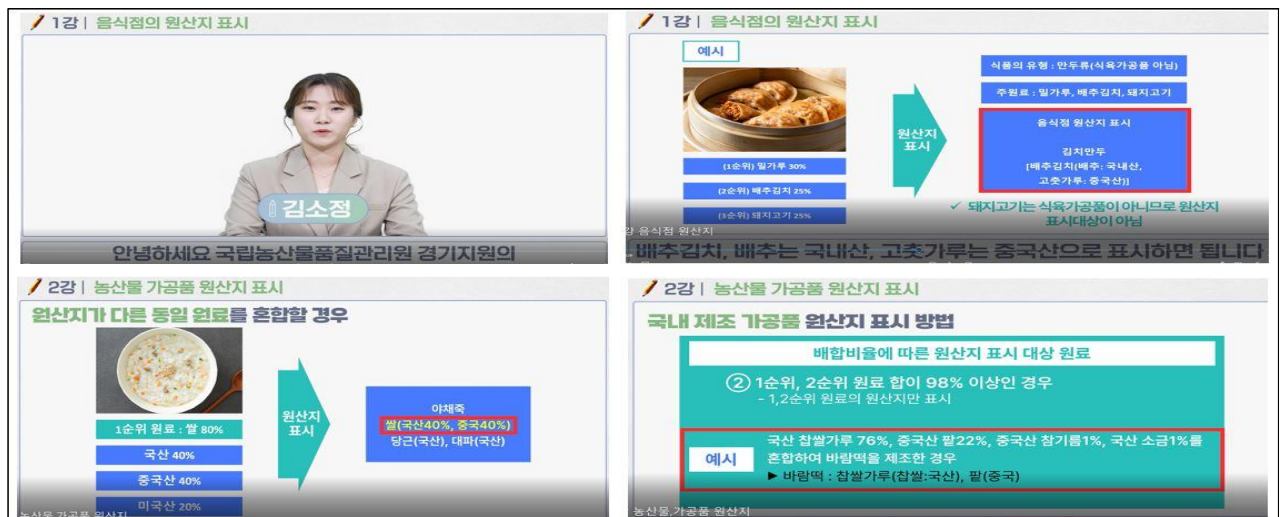
- * 배달앱 중개업체에서 원산지 정보를 필수입력사항으로 지정하여 미입력 시 입점제한, 가격·메뉴정보 수정 시 원산지 표시 확인 기능 추가, 원산지 표시(수정) 안내 문자 발송 등 조치

⑤ 해외직구(구매대행)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 추진('23.7.)

-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에서 해외직구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광고 내용 자체 모니터링 추진

⑥ 배민 협업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동영상 제작·보급('24.5.)

- * (12.1.기준)배민아카데미 누리집 조회수(16,700회) / 농관원 누리집(1,300회)



⑦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 방지를 위하여 입점업체에서 원산지 입력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 문구(창) 표출('24.7.,네이버)

원산지

선택

선택

선택

국내제조 가공식품은 모든 원재료가 국산인 경우에 한하여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원료별 원산지가 다른 경우 '기타'상세설명에 표시'로 선택하고 상품상세설명에 세부 원료별 원산지와 배합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입가공식품인 경우 구체적인 수입국가명(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을 원산지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협의체 구성 · 역할>

총괄		
농식품부 / 해수부		
<연 2회 운영>		
농관원/수품원	통신판매협회/중개업체	소비자단체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제도 교육 ·주요 위반 사례 및 품목 공유(월 또는 분기) ·홍보콘텐츠, 책자 등 제작·배포 ·통신판매중개업체 요청 시 합동 지도·단속	·통신판매 자체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 운영 상황 전파 ·협회 주관(회원사 포함) 홍보 캠페인 추진 ·통신판매 위반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요청	·자체 모니터링 및 현장 지도·홍보 ·원산지표시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참고 원산지 표시 방법 예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2024. 12. 10.>

1.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예시)

원산지 표시판			
구 분	음식명(메뉴)	대상품목(식재료)	원산지
공통	밥	쌀	국내산
	반찬	배추김치	배추 고춧가루
			국내산, 중국산
○○매장	김치찌개	돼지고기	미국산
		콩(두부)	외국산
		배추김치	중국산
	참치 김치찌개	배추김치(생김치)	배추 고춧가루
			국내산 중국산
		배추김치(육수배이스제품)	중국산
	부대찌개	다랑어(참치캔)	원양산
		돼지고기(간고기)	국내산
		돼지고기(스텝)	외국산, 국내산
		돼지고기(프랑크소시지)	국내산, 외국산
△△매장	순두부찌개	돼지고기(프레시햄)	국내산
		콩(순두부)	외국산
		다랑어(참치캔)	원양산
△△매장	돈가스	돼지고기	국내산

문의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899-2112

2. 농산물 원산지 안내표시판(예시)

원산지 안내 표시판		
구 분	메뉴명(제품)	원 산 지
○○행복장터	사과	국산 또는 국내산
	배	충주시
	바나나	필리핀
	딸기	충청남도
	땅콩	제주시 또는 제주도
	무화과	무안군
	된장	메주(콩 : 국산) 소금(국산)
	감식초	감(상주시)
	김부각	김(국내산) 참쌀(국내산) 참깨(중국산)
		쌀(국내산)
		모시송편
	모시송편	모시원(국내산) 동부(중국산)
		갯(국산)
		갯김치
	갯김치	참쌀풀(참쌀 : 국산) 고춧가루(고추 : 중국산) 소금(국산)
		굴(국산)
		고춧가루(고추 : 중국산)
		소금(국내산)
○○행복장터	어리굴젓	굴(국산) 고춧가루(고추 : 중국산) 소금(국내산)

문의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899-2112

3. 가공품 원산지 안내표시판(예시)

원산지 안내 표시판		
구 분	메뉴명(제품)	원 산 지
메뉴공통	튀김용 콩기름	콩기름[대두(외국산 : 미국, 아르헨티나, 벨기에 등)]
○○매장	oo핫도그	소시지[돼지고기(국산), 돼지고기(국산)] 강력분(밀 : 미국산, 캐나다산) 박력분(밀 : 미국산)
		소시지[돼지고기(국산, 외국산), 닭고기(국산)] 쌀떡볶이떡(쌀 : 외국산)
		냉동연육(베트남 50%, 파키스탄 50%)
	핫바 또는 어묵	소시지[돼지고기(국산), 정제소금(중국산)] 밀가루(밀 : 미국산)
		(국내 제조 식품인 경우) 조미간어포(미역(미역, 정제염(호주))
		(수입 식품인 경우) 조미간어포(베트남)
△△매장	튀포구이	오징어(칠레산)
	오징어구이	소맥분(밀 : 미국산, 호주산)
	호두과자	앙금[팥(중국산), 적태(미얀마산)] 계란(국산) 호두(미국산)

문의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899-2112